

파 주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2544호

2026년 8월 25일 (화)

차 례

고시 · 공고

- 경기도 공고 제2026-5987호 파주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(안) 및 전략환경영향
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청취 열람·공고 1
- 파주시 공고 제2026-2303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3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: 파 주 시

**파주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(안)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
주민의견 청취 열람·공고**

파주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(안)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「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,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·공고합니다.

2026. 8. 25.

경 기 도 지 사

1. 평화경제특별구역의 명칭·위치 및 면적

- 가. 명 칭 : 파주 평화경제특구
- 나. 위 치 : 경기도 파주시 월릉면, 파주읍, 문산읍 일원
- 다. 면 적 : 6,878,437㎡

2. 열람내용

가. 평화경제특별구역 개발계획(안) 주요내용

- 목 적 : 「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보완성을 증대하고,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함.
- 비 전 : 한반도 공동 번영의 미래 혁신 거점
- 개발유형 : 산업·관광·주거 복합개발
- 토지이용 : 관광지구(1.3km²), 남북물류지구(1.4km²), 산업지구A(0.9km²), 산업지구B(1.2km²), 복합지구(2.1km²)
- 기 간 : 2026년 ~ 2035년
- 사 업 비 : 1.9조원
- 핵심산업 : 피지컬AI기반 첨단 제조업, 의약품, 기후테크, 평화문화관광, 스마트물류 등
- ※ 그 외 세부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

나.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: 요약서 게재

(전문 게재 생략, 생략된 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)

3.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

가. 열람기간 : ‘26. 8. 25. ~ ‘26. 9. 8.

나. 열람장소

-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기반조성과
 - 주소 :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 북부청사 4층(031-8030-2366)
- 파주시 평화경제과
 -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1, 파주시청 별관 3층(031-940-2976)
- 파주시 월릉면 행정복지센터
 -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월릉면 엘지로 17
- 파주시 문산읍 행정복지센터
 -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
- 파주시 파주읍 행정복지센터
 -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술이홀로 295

○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(www.eiass.go.kr)

(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게재)

다. 관계서류(열람 장소에 비치)

- 파주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(안) 보고서
- 파주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및 초안 요약서

4. 의견제출 방법

가. 제출기한 : 2026. 9. 8.(우편물은 18시 도착분까지 유효)

나. 제출방법 : 열람 장소에 비치된 서류를 열람 후 소정의 양식에 의거 서면 또는 우편 제출

다. 의견접수처

○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

- 주소 :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, 경기도청 북부청사(우 11780)

○ 파주시 평화경제과

-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1, 파주시청 별관 3층(우10930)

라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(☎ 031-8030-2366) 또는
파주시 평화경제과(☎ 031-940-297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

파주시 월롱면, 파주읍, 문산읍 일원에 위치한 평화경제특구 예정지역에 대해 계획적 개발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며, 관련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·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8월 25일

파 주 시 장

1.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면적

- 위치 : 파주시 월롱면, 파주읍, 문산읍 일원(파주 평화경제특구 예정지역)
- 면적 : 6,878,437㎡

2. 제한기간

-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일로부터 2년간 (※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평화경제특구 지정 고시할 경우 해제)

3. 제한대상 행위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
 - 건축물의 건축(건축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) 또는 공작물의 설치
 - 토지의 형질변경(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)
 - 토석의 채취
 - 토지분할(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)
 - 녹지지역 ·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

4. 제한대상 제외 행위

-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
-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·옹벽 및 사방시설,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및 공공용 가설건축물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행하는 공익목적의 행위
-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해 종전 규모범위 내 건축허가(신고)
-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일 전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되었거나, 허가를 받은 행위로 종래에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
- 기타 경미한 개발행위로서 시장이 행위제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

5.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

- 열람기간 : 2026. 8. 25. ~ 2026. 9. 8.(공고일로부터 14일간)
- 열람장소 : 파주시청 평화경제과 / 월롱면·파주읍·문산읍 행정복지센터
- 제출방법 :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 서면 제출
- 제출내용 :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

6.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구역(안)



※ 위 도면은 위치 파악을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.

7. 관계도서 : 열람장소 비치(게재 생략)

8. 문 의 처 : 파주시청 평화경제과(☎031-940-2976)